

■ 인터넷 청약 시 사용 가능 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	-------	--------	---------	-------	-------

※ 청약 신청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 안내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소유여부(무주택)	○	○	○	○	○
세대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주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세대 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으며, 혼인증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오산세교 한신더휴 1인 가구 단독세대 신청불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태아 및 입양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순위 요건 충족 자)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순위 요건 충족 자)
소득 및 자산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필요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필요	-	-
신청가능면적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면적	
청약가능지역	오산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접수방법	원칙 : 인터넷 청약 / 예외 :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정보취약계층)				

■ 유의사항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 ※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중복청약 처리방법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소형·저가 주택소유 시	본인 주택소유 시
노부모	청약자격불가	청약가능 23.11.10 개정 세대구성원 전체 소형·저가 1채만 가능	청약자격불가
기관, 다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가능		청약자격불가

※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세대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인허가·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해당 공급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합니다.